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183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허 영·소병훈·전재수

임호선 • 박성준 • 박지혜

위성곤 • 박 정 • 박정현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 목적 외 신용정보의 누설 및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충분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또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

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중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다음 각 목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공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안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 -----<u>다음 각</u>호의 어느 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 하나에 해당하는----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 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 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1. 다음 각 목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신용정보 제 공의 요구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 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 당 조사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에 필요한 자료로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 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특

	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u><신 설></u>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신용
	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행위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